

감사위원회 저널

Audit Committee Journal

AC Calendar 2023

2023년 감사위원회 캘린더

ACI Insight

2022년 지배구조 평가 결과와 감사위원회 우선과제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독 유의사항
강화된 법적 책임에 대한 감사(위원)의 대응 방안

Depth Interview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22년도 주요 이슈와 23년 활동 제언

Opinion Leader's View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롯한 내부통제제도 개선과제

Beyond Data

국내 상장법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상 주요 애로사항
분석 및 기업과 감사인을 위한 제언

Law & Regulation

소규모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Event / News

삼성KPMG ACI 카카오톡 채널 OPEN

Vol. 22 | January 2023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udit Committee Institute



CEO 인사말씀

감사위원 및 감사님들, 안녕하십니까.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도 어느덧 제22호 「감사위원회 저널」을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번 호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2022년도 주요 이슈와 2023년 활동 제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롯한 내부통제제도 개선과제, 2022년 지배구조 평가 결과와 감사위원회 우선과제, 강화된 법적 책임에 대한 감사(위원)의 대응 방안 등 다채로운 주제를 담았습니다.

삼정KPMG ACI 자문위원인 김우진 교수는 지난해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주주 관여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언급하며, 감사위원회가 주주권리 관련 이슈에 대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이 ESG 경영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ESG위원회 안건의 적시 발제 여부와 실질적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회계부정 또는 이사 의무의 위반·태만 등에 대해 사외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감사가 과징금,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강화된 법적 책임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은 충분한 투입시간을 확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수 책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삼정KPMG ACI 자문위원인 안수현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시기이나, 상장법인의 연이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의 '운영과 평가 환경'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금번 저널에는 특히 새해를 맞이하여 감사위원 및 감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을 다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22호 저널에는 감사위원 및 감사님들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오픈한 ACI 카카오톡 채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및 감사님들 모두 지혜롭고 영리한 토끼의 해안으로 2023년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1월

삼정KPMG CEO

김 교태

CONTENTS

	Executive Summary		04
	AC Calendar	2023년 감사위원회 캘린더	07
	ACI Insight I	2022년 지배구조 평가 결과와 감사위원회 우선과제	10
	ACI Insight II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독 유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영진 관련 내부통제 취약점을 중심으로 -	16
	ACI Insight III	강화된 법적 책임에 대한 감사(위원)의 대응 방안 - 투입시간과 보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	23
	Depth Interview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22년도 주요 이슈와 23년 활동 제언 김우진 삼성KPMG ACI 자문위원·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33
	Opinion Leader's View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롯한 내부통제제도 개선과제 안수현 삼성KPMG ACI 자문위원·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2
	Beyond Data	국내 상장법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상 주요 애로사항 분석 및 기업과 감사인을 위한 제언	48
	Law & Regulation	소규모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	52
	Event / News	삼성KPMG ACI 카카오톡 채널 OPEN	54

Executive Summary

07



AC Calendar

2023년 감사위원회 캘린더

10



ACI Insight I

2022년 지배구조 평가 결과와 감사위원회 우선과제

- 한국ESG기준원은 2022년 11월 '22년 ESG 평가 결과 및 등급'을 공개하였음. 22년 평가에는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었으나, 개정된 모범규준을 반영한 평가모형 개정으로 전년 대비 평가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함
- 본고는 ESG 중 감사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배구조(G)와 관련된 등급을 중심으로, 이사회 일원으로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개정된 모범규준과 당국의 보도자료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분을 주목하여, 감사위원회가 최우선 대응해야 할 과제를 파악하였음

16



ACI Insight II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독 유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영진 관련 내부통제 취약점 중심으로 -

-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증가함
- 내부통제 상 중요한 취약점이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나 태만에 기인한 것일 경우, 법률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거나, 횡령·배임 등 부정 사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본고는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에 해당되는 실 사례들을 분석하는 한편,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 및 감독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제시함

23



ACI Insight III

강화된 법적 책임에 대한 감사(위원)의 대응 방안

- 투입시간과 보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

- 감사(위원회) 관련 법제도의 강화와 증가하는 소송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충실한 역할 수행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감사(위원)이 법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의 시간을 투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수가 책정되는 지, 선관임무 및 충실의무를 다한 감사(위원)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지 점검이 필요함
- 이에 본고는 내실 있는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활동을 도모하고 감사(위원)들이 강화된 법적 책임에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투입시간과 적정보수,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함

33



Depth Interview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22년도 주요 이슈와 23년 활동 제언

- 감사위원회가 살펴보아야 할 22년 주요 아젠다를 하기와 같이 정리하며, 이를 통해 23년 감사위원회가 눈여겨 보아야 할 사항을 조망함
 - 감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에 비례한 감사위원회를 지원할 내부감사실무조직의 충분성
 - 회사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안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 관점
 - ESG 경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독자 역할

42



Opinion Leader's View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롯한 내부통제제도 개선과제

- 소규모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담비용을 줄이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이 모색됨
- 자회사 수가 많은 경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부담과 책임이 증가하기에, 관리와 운영에 최고경영자와 이사회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유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경영진과 이사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충실한 설계와 운영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인적·금전적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구축과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48



Beyond Data

국내 상장법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상 주요 애로사항 분석 및 기업과 감사인을 위한 제언

- 국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상 주요 애로사항을 설문한 결과, '종속기업의 인적자원·인프라 환경 문제', '내부회계 전문 인력의 부족', '경영진 인식 부족'으로 조사됨
- 경영진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하여, 그룹차원의 통제와 연결 결산 관련 통제를 구축해야 하며,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견·중소 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조직을 구성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52



Law & Regulation

소규모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

- 2023년 1월 17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
- 개정된 법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54



Event / News

삼정KPMG ACI 카카오톡 채널 OPEN

2023년 감사위원회 캘린더¹⁾

삼성 KPMG ACI

시기	구분	활동 ²⁾	필수 여부	관련 법규	제22호 관련 원고
1~2월 (변경 가능)	정기적 감사위원회 자체 평가	결의	권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I.3	
	정기적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결의	권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I.1	ACI Insight 3 강화된 법적 책임에 대한 감사(위원)의 대응 방안
	내부감사부서 구성 및 활동 평가	결의	권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V.5	Depth Interview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22년도 주요 이슈 와 23년 활동 제언
1~2월	정기총회 6주 전: 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수령 기한	보고 수령	필수	상법 제447조의3	
2023년 2월	2월 14일: FY2023에 대한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며 △직전 회계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은 회사) [선행되어야 할 사항] -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 개최 및 관련 내용 문서화	결의	필수	외부감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2~3월	재무제표 수령으로부터 4주 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이사에 제출 기한	결의	필수	상법 제447조의4	
2~3월	정기총회 1주 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수령 기한	보고 수령	필수	외부감사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선행되어야 할 사항] - 외부감사인과의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	논의		감사기준서 260, 701	
	[후행되어야 할 사항] - 외부감사인 계약사항 이행 준수 여부 확인	결의		외부감사법 제10조	

1)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주식회사 중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작성함
2)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회사 등 다른 주체가 수행하는 활동인 경우 공란

시기	구분	활동 ²⁾	필수 여부	관련 법규	제22호 관련 원고
2~3월	정기총회 1주 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이사회에 대면보고 기한	보고	필수	외부감사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ACI Insight 2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독 유의사항 Opinion Leaders View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롯한 내부통제제도 개선과제 Beyond Data 국내 상장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상 주요 애로사항 분석 및 기업과 감사인을 위한 참고사항 제시
	[실행되어야 할 사항] - 대표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대면보고 수령	보고 수령			
	[실행되어야 할 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면회의 개최 및 관련 내용 문서화	결의			
정기 주주 총회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불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진술	조사, 보고	필수	상법 제413조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필수	상법 제382조, 제409조, 제542조의12	
3월	3월 31일: FY2022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필수	자본시장법 제159조	
4월	신규 선임 감사위원 대상 입문교육	교육 이수	권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I.5	
4월 (변경 가능)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결의	필수	상법 제415조의2	
4~5월	1/4분기 내부감사 보고 수령, 재무제표 검토	보고 수령, 검토	권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2, IV.2	
7~8월	반기 내부감사 보고 수령, 재무제표 검토				
10~11월	3/4분기 내부감사 보고 수령, 재무제표 검토				
12월 (변경 가능)	감사위원회 활동계획 및 내부감사계획 수립	결의	권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I.2	
12월	12월 31일: FY2023에 대한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으며 △직전 회계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은 회사)	결의	필수	외부감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상법 제542조의11	

시기	구분	활동 ²⁾	필수 여부	관련 법규	제22호 관련 원고
수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논의	필수	감사기준서 260	
	리스크 감독	감독	권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V.4	
	공시정보 검토	검토	(사실상) 필수	자본시장법 제162조	ACI Insight 1 2022년 지배구조 평가 결과와 감사위원회 우선과제
	내부신고제도 감독	감독	권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V.3	
	내부감사부서의 장 임면 동의	결의	권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V.5	Depth Interview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22년도 주요 이슈와 23년 활동 제언
필요 시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검토 및 승인	결의	필수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결의	필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부정조사 및 보고	조사, 보고	필수	외부감사법 제22조	
	자회사 감독	감독	(사실상) 필수	상법 제412조의5, 외부감사법 제7조	

2022년 지배구조 평가 결과와 감사위원회 우선과제

삼성KPMG ACI

- 한국ESG기준원은 2022년 11월 '22년 ESG 평가 결과 및 등급'을 공개하였음. 22년 평가에는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었으나, 개정된 모범규준을 반영한 평가모형 개정으로 전년 대비 평가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함
- 본고는 ESG 중 감사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배구조(G)와 관련된 등급을 중심으로, 이사회 일원으로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개정된 모범규준과 당국의 보도자료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분을 주목하여, 감사위원회가 최우선 대응해야 할 과제를 파악하였음

조사 배경

- 한국ESG 기준원은 자본시장의 ESG 평가 및 연구와 투자자 대상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 11월 '22년 ESG 평가 결과 및 등급'을 공표하였음
 - 공개된 22년 평가등급은 전년 대비 양호한 기업의 비율이 두루 하락한 것으로 공표되었는데, 하락의 주원인은¹⁾ i) 개정된 모범규준이 반영된 평가모형에 기업의 이해도가 낮았고, ii)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공시체계 수립이 어려웠으며, iii)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높은 ESG 쟁점이 발생한 경우 평가등급을 하향조치하는 심화평가 영향력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정리됨
- 본고는 22년 ESG평가 등급 중 감사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배구조(G) 등급을 중점으로, 평가등급 동향과 전반적인 평가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친 원인 분석 그리고 개정된 모범규준과 당국의 보도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가 최우선 대응할 과제를 파악하고자 함

1) 2022년 한국ESG기준원(KCGS)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한국ESG기준원, 2022.11

22년 지배구조 평가등급 동향과 전반적인 등급 하락의 원인

(1) 22년 지배구조 평가등급 동향

■ **전반적으로 하락한 지배구조 평가등급** 22년 지배구조 평가등급은 [표1]과 같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특히, 평가등급이 취약 또는 매우 취약에 해당하는 기업 비중이 전년 대비 급증하였는데, 이는 개정된 모범규준을 반영한 평가모형에 기업의 대응이 어려웠음을 의미함

표1. 전년 대비 지배구조 등급 부여 현황(유가증권시장 대상, 단위: 개사)²⁾

등급		비금융사 지배구조		금융사 지배구조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탁월	S	-	-	-	-
매우 우수	A+	8	5(▼3)	9	3(▼6)
우수	A	154	77(▼77)	27	26(▼1)
양호	B+	313	141(▼172)	40	50(▲10)
보통	B	196	137(▼59)	23	24(▲1)
취약	C	39	160(▲121)	8	6(▲2)
매우 취약	D	8	206(▲198)	4	5(▲4)

■ **기업의 관심도 증가** ESG 경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에, 평가 피드백 과정에 참여한 기업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22년 지배구조 평가는 1,0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그중 46%인 475개사가 평가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피드백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2) 2022년 한국ESG기준원(KCGS)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한국ESG기준원, 2022.11

표2. 최근 3개년간 지배구조 평가대상 기업과 피드백 과정에 참여한 기업의 추이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150지수 구성 종목, 대기업집단소속, 금융회사 대상³⁾

평가 대상	2020년 피드백 참여율	2021년 피드백 참여율	2022년 피드백 참여율
비금융사	31.4% (853개사 중 268 개사)	30.5% (894개사중 373개사)	41.9% (919개사 중 385개사)
금융사	54.5% (110개사 중 60개사)	64.9% (112개사 중 72개사)	78.9% (114개사 중 90개사)
소계	34.1% (963개사 중 328개사)	34.3% (1,006개사 중 345개사)	46.0% (1,033개사 중 475개사)

(2) 22년 지배구조 평가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친 원인

■ (원인1) 개정된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평가모형 22년 평가등급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준칙에서 강조하는 이사회 중심의 중대성 이슈 및 지속가능성 검토 역할이 대폭 강조된 평가모형(3차 개정 지배구조 모범규준(2021년) 반영)을 통해 산출되었는데, 개정된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평가모형에 대한 회사의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파악됨

- 개정된 모범규준은 'I. 이사회 리더십' 부분의 전 영역에서 i) 이사회(위원회)가 기업이 속한 업종의 중대성 이슈를 파악하고, ii) 이사회(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획을 세우며, iii) 목적에 부합하는 실무 조직을 갖춰 전사적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iv) 최종 성과를 측정하도록 강조하고 있음

표3. 2차 개정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3차 개정 지배구조 모범규준 비교⁴⁾

2차 개정 지배구조 모범규준(22년 이전평가)		3차 개정 지배구조 모범규준(22년 평가부터)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I. 주주	1. 주주의 권리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3. 주주의 책임		
II. 이사회	1. 이사회회의 기능 2. 이사회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3. 사외이사 4. 이사회 운영 5. 위원회 6. 이사의 의무 7. 이사의 책임 8. 평가 및 보상	I. 이사회 리더십	1. 이사회 역할과 책임 2. 이사 역할과 책임 3. 이사회 구성 4. 사외이사 5. 이사회 운영 6. 위원회

3) 2022년 한국ESG기준원(KCGS)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한국ESG기준원, 2022.11

4) 한국ESG기준원이 공개하는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용을 정리

2차 개정 지배구조 모범규준(22년 이전평가)		3차 개정 지배구조 모범규준(22년 평가부터)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III.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2. 외부감사인	II. 주주권 보호	1. 주주권리 2. 주주총회
IV. 이해관계자	1.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2.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참여	II. 감사	1. 내부감사 2. 외부감사
V.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1. 공시 2. 기업 경영권 시장 3. 기관투자자	IV.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1.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2. 정보공개

■ (원인2) 글로벌 이니셔티브 준칙을 충족시킬 자율 공시 요구 ‘3차 개정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의 비재무정보 프레임워크⁵⁾ 중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과 [표4]의 GRI 102 Core 등과 견주어 한층 높은 수준의 대응을 기업에 요구하나, 이는 사업보고서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같은 의무 공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기에 상당수 기업은 자율 공시 등으로 대응하지 아니한 상황임

표4. GRI 102 Core에 제시된 지배구조 공시 요구 사항(요약)⁶⁾

분류	GRI Code	내용
지배구조 개요	102-18~19	지배구조 구성: 경제, 환경, 사회토픽에 대한 권한 위임 프로세스
	102-22~24	이사회 및 소위원회 구성: 의장 프로필 및 추천, 선정과정
	102-26	목표, 가치, 전략 수립에 대한 최고이사결정기구 역할
이사회 관리	102-25	이해상충 프로세스 및 관리내용
	102-27	최고이사결정기구의 집단지식(교육 및 개발)
	102-28	최고이사결정기구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수행내용
이사회 활동	102-20~21	경제, 환경, 사회 토픽에 대한 임원급의 책임: 이해관계자 소통
	102-29~30	경제, 환경, 사회 토픽에 대한 임팩트 식별과 관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102-31, 33~34	경제, 환경, 사회 이슈검토: 주요 토픽의 보고/소통
	102-32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최고이사결정기구의 역할
보상	102-35~37	보상정책: 보수결정절차
	102-38~39	연간 총 보상 비율: 연간 총 보상 인상률

5)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www.cdp.net),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www.fsb-tcfd.org),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www.sasb.org) 등이 해당함

6) ESG 경영과 지배구조: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방안, 법무법인 태평양, 2022.04

■ **(원인3) 평가등급 산출에 심화평가(부정적 사건 등) 비중 확대**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높은 ESG 쟁점이 발생한 경우 평가등급을 하향조치하는 심화평가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22년도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한 회사에 대한 감점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알려짐

- 등급을 하향조정시키는 부정 이슈는 법을 최종적으로 ‘위반’ 한 것이 아닌 ‘혐의’가 발생한 건도 포함됨

■ 표5. 22년 평가에 반영된 부정적인 이슈 현황⁷⁾

대분류	중분류	해당 회사의 수
비금융사	횡령 및 배임	3개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사
	공정거래법 위반	2개사
금융사	불완전 판매	5개사
	횡령 및 배임	1개사

감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우선 과제

■ **(이사회 경영 전략, 수립 검토 및 ESG 리스크 관리)** 3차 개정된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이사회 리더십 1.2는 ‘이사회 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촉진’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정의하며,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 하고 ‘기업의 국제 표준화에 대비’하기 위해 [표6]의 주요 산업 기준별 공시 주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즉, 이사회 감독 책임이 있는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속한 산업과 관련된 이슈가 이사회에서 적시에 다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최종 산출되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7) 2022년 한국ESG 기준원(KCGS)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한국ESG 기준원, 2022.11

표6. 10개 산업 기준별 주요 공시 주제⁸⁾

분류	내용
가정 및 개인용품	물관리, 제품환경 및 보건, 안전 성과, 포장재 수명주기
산업용 기계	에너지 관리, 작업자 보건 및 안전, 연비 및 사용단계 배출량 등
상업은행	데이터 보안, 금융포용 및 역량구축, 시스템적 위험관리 등
전력발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자원 계획, 대기질, 물관리 등
주택건설	토지이용 및 생태적 영향, 작업자 보건 및 안전 등
철강제조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 배출량, 에너지 관리, 물관리, 폐기물 관리 등
전기 및 전자장비	에너지 관리, 유해 폐기물 관리, 제품 안전, 제품 수명 주기 관리 등
투자은행 및 중개	기업윤리, 전문가적 진실성, 종업원 인센티브 및 위험 감수
하드웨어	제품 보안, 종업원 다양성 및 포용, 제품수명주기 등
화학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관리, 물 관리, 유해 폐기물 관리

■ **(운영 관련 요건 정비)** 평가등급의 기초가 되는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회와 같은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역할은 ‘이사회 역할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당국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간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순 위원회 설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원회에서라도 안건을 내실있게 검토/심의/의결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함

- 이에, 감사위원회는 변화된 모범규준과 당국의 기초에 따라, [표7]의 K-ESG 가이드라인 내 감사위원회 관련 운영요건을 토대로 감사위원회 규정과 안건 의결 과정 정비를 고려할 수 있음

표7. K-ESG 가이드라인 내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요건⁹⁾

분류	내용
형식적 요건	운영규정에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위원회가 소집 및 운영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
실질적 요건	관련 안건을 보고만 받으면, 이는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책임소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상정된 안건은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의결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8) K-ESG 가이드라인, 산업통상자원부, 2021.12

9) K-ESG 가이드라인, 산업통상자원부, 2021.12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독 유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영진 관련 내부통제 취약점을 중심으로 -

삼성KPMG ACI

-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증가함
- 내부통제 상 중요한 취약점이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나 태만에 기인한 것일 경우, 법률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거나, 횡령·배임 등 부정 사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본고는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에 해당되는 실 사례들을 분석하는 한편,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 및 감독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제시함

논의 배경

- 지난 2022년 12월에 발간된 삼성KPMG ACI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법인¹⁾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비적정으로 받은 기업에 대해 내부통제 영역 비적정 사유를 분석한 결과²⁾ 2020년 대비 2021년에 비적정 사유 총계가 1.5배 이상 증가함
- 2021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94개사이며, 각 기업은 복수의 비적정 사유를 가지므로 비적정 사유의 총계는 [표1]과 같이 2021년 241개인데, 이는 2020년 153개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것임³⁾

1)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DR에서 페이퍼컴퍼니, 선박투자회사, 외국법인 등을 제외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조사하였음

2) 중요한 취약점 분류 기준은 Audit Analytics의 분류 기준을 차용함

3) 삼성KPMG ACI,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4, 2022.12.28.: 2020년 비적정 기업의 수는 87개사로 94개사보다 낮은 수치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비적정 사유 개수의 증가폭이 훨씬 큼

표1.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기업의 내부통제 영역 비적정 사유

순위	비적정 사유	2021		2020		개수 증감
		개수	비율	개수	비율	
1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48	19.9%	22	14.4%	▲26
2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	46	19.1%	18	11.8%	▲28
3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40	16.6%	41	26.8%	▼1
4	범위 제한	37	15.4%	28	18.3%	▲9
5	자금통제 미비	27	11.2%	19	12.4%	▲8
6~13	이하 생략 ⁴⁾					
총계		241	100%	153	100%	▲88

■ [표1]의 내부통제 영역의 비적정 사유 중 특히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으로 지적받은 기업은 2020년 18개사에서 2021년에 46개사로 급증하였고, 이에 2021년에는 비적정 사유 중 2위를 차지함

- 이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거나, 횡령·배임 등 부정 사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눈여겨 보아야 할 현상임

비적정 사유 중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에 대한 분석

■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에 해당되는 기업의 유형은 아래 3가지로 분류됨

표2.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의 3가지 유형

(유형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또는 계열회사 지원 행위가 이사회/감사(위원회) 승인 절차 없이 불투명하고 이례적으로 발생한 경우
(유형2) 자금 집행(투자 의사결정) 등 이사회/감사(위원회)의 감독절차가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이례적인 경우
(유형3) 고위경영진 관련 불법 행위(횡령·배임) 공시나 소송이 있는 경우

4) 생략된 내용은 삼성KPMG ACI에서 발간한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4에서 확인 가능함

■ 각 유형에 해당하는 중요한 취약점의 사례를 아래 [표3]에 기재함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나 자금 집행 절차의 불투명성 등이 그 자체로 부정 사건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부적절한 재무보고가 이루어지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음
-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거나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고위 경영진의 부주의·태만·고의적 위법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표3.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 유형별 중요한 취약점 사례

<p>(유형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또는 계열회사 지원 행위가 이사회/감사(위원회) 승인 절차 없이 불투명하고 이례적으로 발생한 경우</p>
<p>(사례1) 회사는 특수관계자와 관련한 적절한 내부통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성격과 거래가격 등과 관련한 부적절한 재무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p>
<p>(사례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거래의 성격, 거래 관련 내부통제, 거래 가격의 산정등과 관련하여 이사회/감사의 적절한 감독 통제가 설계 및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특수관계자와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합니다.</p>
<p>(사례3)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 소집 및 결의 과정과 대여 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p>
<p>(유형2) 자금 집행(투자 의사결정) 등 이사회/감사(위원회)의 감독절차가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이례적인 경우</p>
<p>(사례1) 회사의 일부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계약서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자금이 대여되었으며, 자금 회수가 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금이 대여되는 거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적절한 통제활동을 설계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p>
<p>(사례2) 자금거래와 관련한 이사회 승인절차 등 충분하고 적합한 내부통제절차가 미비합니다.</p>
<p>(사례3) 회사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내부의사결정 없이 자금이 집행되는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취약점을 발견하였습니다.</p>
<p>(유형3) 고위경영진 관련 불법 행위(횡령·배임) 공시나 소송이 있는 경우</p>
<p>(사례1) 회사는 현금성자산의 입·출금 및 결산절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적절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前대표이사 횡령 혐의 발생, 금액 74억원)</p>

(사례2) 회사는 투자거래의 정당성과 회수가능성 및 회계처리, 법인인감의 사용 및 사용기록관리 등을 검토하는 적절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투자거래의 분류, 인식, 측정 및 제거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거나, 부외부채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기록되지 아니할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합니다.

(前대표이사 및 前사내이사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금액 47억원)

(사례3) 회사는 특수관계자 범위 및 거래의 식별 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적절하게 공시되지 않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 등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적절히 기록되지아니할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합니다.

(前대표이사 및 前사내이사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금액 47억원)

-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기업 중 내부통제 영역의 비적정 사유가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인 기업 46개사 중, 유형3 ‘고위경영진 관련 불법 행위(횡령·배임) 공시나 소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의 비중이 [표4]와 같이 매우 높은 편은 아니나, 46개사 중 유형3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라도 부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함

표4.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인 기업 46개사 중고위경영진 관련 불법 행위(횡령·배임) 공시나 소송이 있는 경우 (유형3)

공시기간	개수	비율
2022년	14	30%
2021년	7	15%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독 유의사항

-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경영활동 중 특수관계인·계열회사와의 거래나 투자·대여와 같이 대규모 자금이 거래되는 경우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음
 -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권한사항을 일부 위임할 수 있고⁵⁾ 감사위원회는 재무감독 및 리스크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감사위원회 또한 이러한 거래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음

5) 상법 제393조의2제2항

표5. 상법 및 공정거래법 상 영업·투자·재무활동에 대한 이사회 감독을 명문화한 조항

법률	조항
상법	<p>제393조(이사회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p> <p>제447조(재무제표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⁶⁾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p>
공정거래법	<p>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產權)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p>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및 감독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6)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표6.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독 유의사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승인 프로세스	
✓	특수관계자 거래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프로세스가 갖추어져 있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	특수관계자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며, 이러한 정보는 누구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가?
✓	경영진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누락 없이 식별하기 위한 절차(이사회이사록 등의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가?
✓	경영진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종속회사·관계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거래내역과 대사·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
✓	경영진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이 빠짐없이 공시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가? (특히 출자, 대여, 차입, 지급보증과 관련된 공시사항의 누락 여부 중점 검토)
거래의 성격 및 내용	
✓	사업상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이러한 근거는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 및 목표와 부합되는가?
✓	동 거래가 공시되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동 거래의 결과로 혜택을 입는 내부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이익을 볼 것인가?
✓	동 거래가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동 거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가?
비경상적인 거래나 회계처리	
✓	회사의 모든 주요 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평가 절차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비경상적인 거래가 있는가?
✓	거래상대방, 계약조건 등 비경상적인 거래와 관련된 회계정보가 위조·변조·훼손된 사례가 있는가?
✓	유가증권 매매 내역, 유가증권 소유자에 대한 정보 조회를 실시하였는가?
✓	비경상적인 거래의 특정 기간 동안의 추세 또는 패턴을 모니터링하였는가?
부정 방지 프로그램	
✓	내부신고제도 등의 부정 방지 프로그램 관련 역할·책임·위임 등에 관한 조항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하였는가?
✓	내부신고자, 내부신고제도 등의 부정 방지 프로그램 관련 사항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 또는 내·외부 감사인과 정기적으로 (필요 시 비공개로) 검토 및 논의하는가?
✓	재무제표 오류, 비경상적인 거래 및 추세 등에 대한 내부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취해져야 할 후속조치가 적절한 지 평가하였는가?
✓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 유지 여부, 불이익한 대우 방지, 포상금 지급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감사(위원회)가 내부신고제도의 운영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가?

■ 최근 감독당국 또한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이사회, 관련 임원의 내부통제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음⁷⁾

- 이에 따라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임
- 그러나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무조건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하였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였다면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간주하여 책임을 경감·면책하고자 함

7) 금융위원회,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한 대표이사,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강화 -”, 2022.11.30

강화된 법적 책임에 대한 감사(위원)의 대응 방안

- 투입시간과 보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

삼성KPMG ACI

- 감사(위원회) 관련 법제도의 강화와 증가하는 소송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충실한 역할 수행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감사(위원)이 법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의 시간을 투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수가 책정되는 지,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한 감사(위원)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지 점검이 필요함
- 이에 본고는 내실 있는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활동을 도모하고 감사(위원)들이 강화된 법적 책임에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투입시간과 보수,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함

논의 배경

- 최근 수 년 간 회계부정 발생 또는 이사 의무의 위반·태만 등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표1. 사외이사 대상 국내 주요 소송과 판결¹⁾

기업	구분	내용
C사	사건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C사 주식의 취득자가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대법원 선고 (2014,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책’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냄 -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사정이 아님은 물론이며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허위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사정도 아님
S사	사건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은행 등 채권단이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대법원 선고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책’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재무제표의 승인 등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일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표이사 등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지위에 있으며, 이는 사외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 회사의 재무에 관여할 수도, 관여할 능력도 없었고, 분식회계 내지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는 더더욱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K사	사건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로의 기부(150억원)가 K사에 손실이 되었기에 이를 의결한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K사가 소송을 제기
	대법원 선고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책’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회사의 설립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본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들이 그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
D사	사건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 손실에 대해 사외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다수의 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됨
	대법원 선고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책’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분식으로 인한 허위의 기재가 있었음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

1) 사외이사가 유일한 피고는 아님

■ 2021년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감사가 과징금 등의 조치를 부과받았으며, 2022년에도 감사에 대한 해임권고가 잇따름

표2. 금융위원회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기업	지적사항	조치
L사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 횡령액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 기계장치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외부감사 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前대표이사: 과징금 569.6백만원, 해임권고 상당, 검찰고발 前감사: 과징금 13.5백만원, 해임권고 상당, 검찰고발 회사: 과태료 48백만원, 감사인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12월 등
C사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보증금 허위계상 선금금 과대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前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 (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같음) 前감사: 해임권고 조치 (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같음) 회사: 증권발행제한 12월
E1사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집합투자기구(펀드) 과대계상 등 대여금 과대계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前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前담당임원 2인: 면직권고 상당 前감사: 해임권고 상당 회사: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p>※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p>
E2사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 등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재고자산 과대계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유형자산 과대계상 무형자산 과대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前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 (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같음) 前감사: 해임권고 조치 (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같음) 회사: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 감사(위원)은,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²⁾,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³⁾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그리고 상법 제401조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에 대해 인지해야 함

- 감사위원은 상법에 따른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은 감사위원에 적용됨
- 상법 제415조에 의거, 감사에게도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이 준용됨

2) 상법 제382조제2항, 민법 제681조

3) 상법 제382조의3

표3. 상법 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p>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p> <p>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회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p> <p>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p>
--

■ 감사(위원)이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책임에 더하여 최근의 법제도 개정은 감사(위원)의 법적 책임을 특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 직을 수행하는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은 회계 부정 발생 시 감사(위원)이 받을 수 있는 제재 수위를 종전보다 대폭 강화함

표4. 외부감사법 상 회계부정 발생 시 감사(위원)에게 원칙 상 적용 가능한 제재

성립요건	적용 가능한 제재	관련 조항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임 또는 면직 권고 •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제29조제1항제1호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때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과징금 상한 - 회계처리기준과 다르게 작성된 금액의 20% • 감사(위원): 과징금 상한 -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 	제35조제1항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 가중처벌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9조

4) 자산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감사(위원)에 대한 강화된 법적 책임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고는 다음을 제안함

- 충실한 감사(위원회) 활동을 위한 투입시간의 확보와 이에 기반한 보수 책정
 - 법 개정, 소송 증가 등의 상황에서 감사(위원)이 충분한 투입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지 검토
-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 활용: 면피의 수단이 아닌, 적극적·독립적인 감사(위원회) 활동의 토대

투입시간 증대에 기반한 보수 책정

■ 한국 및 미국 주요 기업의 감사위원에 대하여⁵⁾, 감사위원회 회의활동에 투입한 시간 대비 보수를 산정한 결과, 감사위원 보수의 절대 금액은 미국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으나, 투입시간을 고려할 경우 한국과 미국 간 유사한 수준의 ‘감사위원회 회의활동 투입시간 대비’ 보상을 지급 받는 것으로 분석됨

- 감사위원이 연간 지급 받는 보수의 절대 금액은 한국 조사 대상 기업 약 5,890만원, 미국 주요 기업 약 1억 8,969만원으로, 미국이 한국의 3배를 초과함
- 그러나,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 회의활동을 위해 연간 투입하는 시간을 ‘지표화하여’ 산출한 결과, 미국 감사위원이 한국 감사위원보다 감사위원회 회의활동을 위해 연간 3배 이상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감사위원 평균 보수를 감사위원회 회의활동 투입시간 지표로 나눈 ‘감사위원회 회의활동 투입시간 대비 보수’는 한국이 약 848만원, 미국이 약 875만원으로, 양국 간 큰 차이가 없음

표5. 감사위원회 회의활동 투입시간 대비 감사위원 보수: 한국 vs. 미국 비교

구분	한국 (13개사)	미국 (S&P500, 추정치)
감사위원회 회의활동 투입시간 대비 보수 (A/B) (1시간 당 보수가 아님^(*))	8,481,551원	8,752,514원
감사위원 평균 보수 (A)	58,901,985원	189,692,496원 ⁶⁾
감사위원회 회의활동 투입시간 지표 (B)	6.9	21.7

(*) 감사(위원회) 활동은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공식적인 ‘회의 활동(안건 승인 및 보고)’에 더하여, ‘회의 이외 활동’으로 분류되는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미팅, 내부감사실무조직 감독, 교육, 자체 성과평가 등의 활동까지 포함하나, 동 분석에서는 회의활동에 국한함

5) 한국은 감사위원회 제도와 감사 제도가 병존하나 미국은 감사위원회 제도만 보유하고 있어, 동 분석에는 감사위원만 포함

6) Spencer Stuart, “2022 S&P500 Compensation Snapshot”, 2022 / 2022년 12월 말 환율 적용

■ 단, 상기 분석 정보는 양국 모두 조사 대상의 대표성 및 완전성이 다소 부족하나, 현상을 이해하는 보조 정보로서 활용되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표6. 분석의 한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및 타 위원회 활동, 교육 참가, 현장 방문 등의 여타 활동에 대한 정보는 한국과 미국 모두 충분히 공시되지 않아 투입시간에 반영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감사위원회 회의 이외 활동을 통한 감독을 중시하여, 한국보다 투입시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대상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중 감사위원회 회의시간을 공시하고, 상근감사위원이 없는⁷⁾ 13개사로, 활용가능한 공시 정보의 제약으로 인하여 모수가 작음⁸⁾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수는 S&P500 기업 기준이나, 감사위원회 회의횟수 및 회의시간의 경우 전수 조사가 아니며, 감사위원회 회의시간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를 가중평균한 값임

표7. 감사위원회 회의활동 투입시간 지표 산정 방법

(감사위원회 회의활동 투입시간 지표) =	$\frac{\text{(감사위원회 연간 회의횟수)}}{\text{(감사위원회 평균 회의시간)}}$
------------------------	---

표8. 감사위원회 연간 회의횟수 및 평균 회의시간

구분	한국 (13개사)	미국 (S&P500, 추정치)
감사위원회 연간 회의횟수	8.9회	8.6회
감사위원회 평균 회의시간	47분 ⁹⁾	2시간 32분 ¹⁰⁾

■ 국내 주요 기업 감사위원회는 강화되는 역할 및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회의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것이 권장됨

- 국내 감사위원회 평균 안건 수는 2018년 14.4건에서 2021년 19.2건으로 5건 가까이 증가하였는데¹¹⁾, 안건 수의 양적인 증가 뿐 아니라 안건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회당 회의시간이 현재보다는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7) 미국과의 분석 기준 통일을 위해, 미국에는 없는 상근감사위원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제외함

8) 공시 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금융회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비금융회사의 현황을 반영할 경우 평균 회의시간이 하향될 수 있음

9) 단순 행정 안건(감사위원장 선임, 직무대행 순위 결정 등)을 다른 15분 미만의 회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 감사위원회 회의활동 투입시간 지표를 산정할 때에는 시간 단위로 환산(약 0.78시간)하여 적용

10) CAQ·Deloitte,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1 / 이 보고서 상 설문 조사 결과를 가중 평균함. 비록 소수지만 S&P 500 기업 중 감사위원회 평균 회의시간을 공시한 경우, 실제로 이 평균에 근접함

11) 삼정KPMG ACI, "2022 Audit Committee Outlook" Vol.4, 2022.8

- 회의 전,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또한 지금보다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행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회사 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에 의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둔 안건의 사전 통지가 선행되어야 함
- 투입시간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다룸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회의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유의미하게 늘어난 경우, 이를 토대로 회사에 적절한 수준의 보수 책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감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참석 등을 포함한 감사로서의 활동시간을 증대하고, 이를 토대로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시간에 대한 공시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함

- 현재는 일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회의시간을 기재하고 있음

표9. 감사위원회 회의시간 공시 사례

W지주

○ 제2021-12차 감사위원회 : 2021.12.17. (14:20~15:00)
[안건통지일 : 2021.12.09]

항 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정○○	노○○	장○○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안건				
가.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 현황 ¹⁾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4. 의결안건				
가. 2022년 그룹 감사 계획(안) ²⁾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자회사등의 외부감사인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사전승인(안) ³⁾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공시정책의 수립, 관련 지침 개정 현황 및 2021년도 공시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2) 2022년 지주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연간 감사계획 승인
3) 자회사등의 외부감사인 감사계약 및 비감사계약 사전승인

Nestle

Meetings held in 2021	Frequency	Average duration (hours)
Board of Directors of Nestlé S.A.	13 times	2:35
Chair's and 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	8 times	1:55
Compensation Committee	5 times	1:20
Nomination Committee	6 times	1:05
Sustainability Committee	4 times	1:55
Audit Committee	4 times	2:25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 활용

■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이란, 회사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부당행위¹²⁾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그 경제적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임¹³⁾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¹⁴⁾ 등을 보상하지만,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 의무해태, 고의적인 법령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보상하지 않음

표10. 임원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예시)¹⁵⁾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의 업무상 과실 및 임원으로서의 법적 의무위반 등 부당행위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주주 또는 제3자와의 소송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¹⁶⁾ • 법률이나 정관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의 배상책임을 회사가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보상 •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등¹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 대주주 및 지배주주¹⁸⁾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상기 임원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관련하여, 만일 이사가 소송의 피고가 될 경우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함¹⁹⁾

- 앞서 언급한 사외이사 대상 판례 중 C사, S사 등의 경우, 피고였던 사외이사 등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분식회계나 허위기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그 자체로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임무해태를 나타낼 뿐, 지위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허위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12) Wrongful Acts: 직무상의 의무 위반, 부주의, 과실, 허위진술, 태만, 누락 등

13) 흥국화재해상보험 홈페이지,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 설명

14) 벌금, 과태료, 징벌적 손해배상금, 세금 등은 제외

15) MSIG, “임원배상책임보험 표준제안서”, 2020.9

16) 소송 전 화해(합의)시 합의비용 보상

17) 단, 형사소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는 보상하지 않음

18)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보유한 주주

19)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 이와 대조적으로 D사 판례의 경우, 사외이사들이 재직기간 동안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부분 참석하였으며, 전문적인 회계영역에 대하여 경영진, 외부감사인에게 질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재무제표에 허위 기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조사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사외이사들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의 기재가 있었음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시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만, 보장 범위에 속하는 충실한 역할 수행이 강조되어야 함

- 단순히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보상 금액이 더 높거나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할 경우, 회사의 자금으로 임원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보전함으로써 임원의 면피에 악용된다는 비판에 처할 수 있음
- 앞서 언급된 D사의 사외이사들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당시 회사의 경영진은 분식회계를 의심하게 할 만한 내부 정보를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분식회계가 공론화된 후 보험사는 D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들어 책임을 극구 회피하는 등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음²⁰⁾
-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발전적인 인식을 토대로 감사(위원) 또는 사외이사가 자신의 역할을 적극·독립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결론 부문에서 다룸

결론

■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 회의활동에 투입하는 시간, 감사가 이사회 참석 및 감사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또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감사위원 및 감사, 회사)** 감사(위원회) 또는 사외이사 지원조직에, 회의 개최 전 회의자료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통지를 요청해야 하며²¹⁾, 지원조직은 이에 조력해야 함
- **(감사위원 및 감사, 회사)**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회사에 요청하며, 이 때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함²²⁾
- **(회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별 회당 회의시간을 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20) 신광식, “나는 D사의 사외이사였다”, 2022.8

2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호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2주일 전까지 제공하되, 금융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

22) 상법 제415조의2제5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회사)** 화상회의 장비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감사(위원)에게 사용법을 안내하여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회의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²³⁾
- **(감사위원 및 감사,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재무·회계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함

■ **감사위원 및 감사는 회사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그 내용을 사전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사외이사 비율이 높거나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외이사 비율이 낮거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사회가 회사로 하여금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²⁴⁾
 -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입장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경영진 감독이라는 임무 수행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역할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음
- 회사가 내실 있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감사 또한 대표이사나 경영진의 독단에 대해 내실 있는 감독 및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임
- 유사한 분식회계 사건일지라도 사외이사가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상 여부에도 영향을 미침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수단이 될 수 없으며, 독립적인 감시 기능 수행을 위한 보완장치로 간주되어야 함

23)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개정 외감법 및 시행령 법령해석 회신문(180352)”, 2018.10.19.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문구 상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보고·회의 절차가 대면(對面)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감독당국은 ‘상호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보고 및 회의가 충실히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고·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들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보고·회의를 실시하면 대면회의·대면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

24) 김용식·강선아, “기업지배구조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과 보험료에 미치는 효과”, 회계와 감사 연구 제52호, 2010.12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22년도 주요 이슈와 23년 활동 제언

김 우 진 삼정KPMG ACI 자문위원·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할까?

◆ **삼정KPMG ACI:** 2022년은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여러 이슈가 자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감독이나 내부감시장치와 관련된 사건, 주주권리 보호 관점에서 감사위원회가 살펴야 할 일도 있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관심가져야 할 이슈를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 **김우진 자문위원:** 감사위원회가 소개된 이슈에 고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재무제표의 완전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 관점에서 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주주가 선출한 회사 이사회 의 일원으로 주주권리 측면도 다뤄야 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에 자문을 하고, 감사위원회 활동도 하다보니, 앞선 이슈들을 감사위원회가 잘 다룰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왜 조명이 안 될까 의문입니다.

◆ **삼정KPMG ACI:** 교수님 말씀은, 감사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이슈에 충실하려면, 그에 요구되는 업무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고,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김우진 자문위원:** 학자로서, 감사위원회 관련 연구를 다수 진행하며, 감사위원의 역할에 대해 제가 전해 들은 사례를 하나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명한 로펌 소속의 K 변호사는 유가증권시장 A 회사의 감사위원으로 새로이 선임되었다고 합니다. K 변호사는 임기 첫날 회사가 제공해준 ‘감사위원회 직무’를 읽어보며 ‘감사위원회 활동을 하며, 어디까지가 나의 의무이고 책임 범위인가? 그리고 통제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 고민하며, 회사에 ‘감사위원회를 지원할 인력은 어떠한가?’ 문의하였는데, 회사로부터 별도의 전담 인력은 없고, 필요할 때 유관부서에서 3명 가량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어, K 변호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감사위원회 직무’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는 넓은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원받을 인력은 충분치 않으니, 현실적인 업무 수행은 너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다음 위원회 회의 때 사임했다고 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수락하면서, 우리 상장사의 감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원받을 조직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KOSPI 200 편입기업 중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내부감사부서가 확인된 기업의 수는 175개사였고, 이중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라인과 임명권을 감사위원회가 확보한 회사는 불과 17개사 그쳤습니다. 약 10%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인터뷰 서두에 언급된 이슈는 분명히 감사위원회가 관여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 그만큼 중요한 일에 감사위원회가 대처하려면, 전담으로 조력할 조직은 필수이고, 지원 조직이 없다면, 감사위원회는 이슈에 대한 대처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법규는 회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지원조직이 부실한 경우 행정권고를 병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¹⁾

■ 표1.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 KOSPI 200 편입기업 175개사의 내부감사부서 보고라인과 임면 동의권 현황²⁾

분류	회사수(비율)
보고라인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한 회사	57개사(32.6%)
임면동의권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한 회사	63개사(36.0%)
보고라인과 임면동의권을 모두 감사(위원회)에 부여한 회사	17개사(9.7%)
해당없음(미공시 포함)	38개사(21.7%)
합계	175개사(100.0%)

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2) 2022 Audit Committee Outlook, 삼정KPMG ACI, 2022. 08

실무 사례를 강조하자면, 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요구하는 분위기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위원회를 지원할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감사위원회를 ‘잘’ 지원해보았다는 팀은 눈에 띄지 않고 그 역사도 짧으니, 감사위원회를 지원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2022년부터 회계법인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인 삼정KPMG ACI의 자문 교수로 활동하며, 그간 만들어진 콘텐츠를 살펴보니, 감사위원회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 주변 감사위원께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Downside Risk,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본질적 역할

◆ **삼정KPMG ACI:** 감사위원회가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이 선제 되어야,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럼 인터뷰 초반 말씀드린 감사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이슈가 뉴스를 통해 보도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감사위원회의 역할론입니다. 2022년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중 어떤 이슈가 가장 기억이 나며, 그에 대한 감사위원회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김우진 자문위원:** 이슈에 대응하는 감사위원회 역할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속한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이기 이전에 이사회의 구성원(사외이사)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넓은 관점에서 이사회 의결이 감사위원회가 가져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느냐 판단하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또한 지배주주 혹은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사회를 감독해야 하는 감독자 입장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 선임에 적용되는 ‘3% Rule’입니다. 감사위원회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3% Rule’ 취지를 고려한다면, 감사위원은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감독함에 있어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도 놓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2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는, 역시 경제 뉴스에 가장 많은 지면이 할애되고 있는 주주권리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들은 승계, 조직개편, 신주, 분할상장과 같은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에서 다루는 첨예한 이슈들이죠.

앞서 '3% Rule'을 예시로 든 것처럼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주요 의결이 일반주주 입장에서 주주가 치 훼손 여부가 있는지, 일반주주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회사의 지배주주나 경영진과 이해가 충돌할 경우 조정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합병이 있습니다. 합병을 추진하는 상장사와 지배주주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와의 합병을 가정해보면, 지배주주는 합병법인인 상장사 가치를 낮게 유지하여야, 상대적으로 피합병될 비상장사 주식가치가 높아지고, 합병비율에 따라 지배주주가 가진 비상장사 주식으로 상장사의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보유 중인 상장사의 주식 가치가 높을 때 합병을 진행해야 유리하죠.

이때 감사위원회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의결에 참여해야 할까요? 감사위원회가 일반주주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이사보다는 일반주주 입장이 어떠한지에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하고, 의결 과정에서 조율하는 교섭자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합병이 추진된다면, 회사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합병이 지연되거나 무산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주권리에 이슈가 되는 것은 합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분할상장, 증자 뿐만 아니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슈도 많습니다. 감사위원회 역할은 Downside Risk, 즉, 이슈로 불거지는 이벤트가 하방위험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도 주목받을 이슈는 주주권리

◆ **삼성KPMG ACI:** 교수님께서, 2023년에는 어떤 이슈가 가장 주목 받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김우진 자문위원:** 앞으로의 감사위원회가 많이 접할 이슈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주주권리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배구조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 몇 가지 빅 이벤트가 있었고, 그중 하나가 2016년 도입된 스투어드십 코드, 이른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입니다. 해당 원칙 도입 당시, 제도의 정착 여부도 불투명했고, 일각에서는 기업 사냥꾼에 의해 우리 증시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만 봐도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지배주주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합병이나 혹은 증자에 제동을 걸기도 하고, 주주총회 시즌에는 배당 증액을 제안하거나 혹은 임원 선임을 제안하여 성공시키는 사례가 많았지요.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주주간담회 등을 통해 주주 입장을 수용하는 비율도 높아졌으며, 언론에서도 기업 사냥꾼 논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주권리를 바라보는 잣대가 점차 바뀌어 가는 상황이라고 해석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수록 더 많은 주주권리 이슈가 예상되기에, 우리 감사위원회도 이에 대한 대처를 준비할 시기입니다.

감사위원회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까?

◆ **삼정KPMG ACI:** 그럼, 이런 이슈들을 다룰 때 감사위원회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과거보다는 한층 높거나 혹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요구하는 전문성은 회계 또는 재무와 관련된 영역인데, 일각에서는 회사가 속한 산업 전문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사회 환경을 고려해볼 때 어떤 전문성이 우선 과제일까요?

◇ **김우진 자문위원:** 이에 대한 견해는 회사의 경영진이 감사위원회에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합니다. 흔히, 사외이사나 혹은 감사위원에게 붙는 수식어가 ‘경영의 조력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흔히 말하는 ‘재벌’ 성향이 짙다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이사회의 ‘거수기’라는 표현도 빈번히 사용됩니다. 각각의 표현이 의미가 조금 달라 보이지만, 현실에서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은 크게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배구조에서 언급되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이 담보되려면, 감사위원회에게 최우선적으로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독하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데, 그러한 감독기능에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Financial Literacy’ 즉, 이사회에서 다루어지는 재무 관련 안건을 이해할 수 있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성이고, 이것이 충족되어야지, 이사회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안건을 경영진과 독립적 입장에서 감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지요. 회사가 속한 산업의 깊은 이해를 가지고 경영진에게 자문을 하는 것은 역할은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이 산업 전문성도 지닌 자라면 마다할 필요가 없겠지만, 경영 상 중대한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산업 이해도는 회사의 경영진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 선택지가 있다면, 경영진은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이 회사에 이로운 것인지 감사위원회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추진하는 경영 의사결정 방향이 궁극적으로 회사에 이로운 방향인지 감독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SG 경영시대, 감사위원회는 무엇에 집중하여야 하는가?

◆ **삼정KPMG ACI:** 마지막으로, 요즘 경영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중 하나는 ESG입니다. 실제 우리 상장회사 상당수가 ESG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 환경에 ESG를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ESG 역사가 짧은 만큼 감사위원회가 ESG를 어떤 관점에서 감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우리 ACI에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김우진 자문위원:** 확실히 요즘 경영환경에서 ESG만큼 많이 회자되는 테마도 흔치 않고, 기업의 높은 관심도는 ESG를 다루는 위원회 설치 기업의 증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2.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ESG 위원회 설치 흐름³⁾

설치시점	설치형식	회사수(비중)
2022년	신설	37개사(19.58%)
	확대개편	4개사(2.12%)
2021년	신설	98개사(51.85%)
	확대개편	36개사(19.05%)
2020년	신설	3개사(1.59%)
	확대개편	2개사(1.06%)
2019년	신설	1개사(0.53%)
	확대개편	0개사(0.00%)

3) 유가증권 상장회사 ESG 위원회 현황, 경제개혁연대, 2022. 10

설치시점	설치형식	회사수(비중)
2018년	신설	1개사(0.53%)
	확대개편	2개사(1.06%)
2017년	신설	3개사(1.59%)
	확대개편	0개사(0.00%)
2016년	신설	1개사(0.53%)
	확대개편	0개사(0.00%)
2016년 이전	신설	1개사(0.53%)
	확대개편	0개사(0.00%)
소계	-	189개사(100.00%)

그렇지만, 이들 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안건을 살펴보면, ESG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ESG 전략이나 ESG 공시 관련 논의는 각기 10% 수준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통상적인 위원회 운영 혹은 규정 정비나 위원장 선임과 같은 활동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위원회는 이들 위원회 안건을 살펴서 회사가 추진하는 ESG 경영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안건이 적시 제시되는지 혹은 그 안건이 실제 이행되는지 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표3. 2021년~2022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ESG위원회의 ESG 안건분류⁴⁾

	안건 보고	안건 심의	안건 의결	안건 합계
ESG 전략 및 계획	50 (6.78%)	3 (0.41%)	45 (6.11%)	98 (13.30%)
공시(일반)	3 (0.41%)	0 (0.00%)	0 (0.00%)	3 (0.41%)
공시(ESG 관련)	61 (8.28%)	4 (0.54%)	21 (2.85%)	86 (11.67%)
위원회 운영(일반)	32 (4.34%)	4 (0.54%)	19 (2.58%)	55 (7.46%)
위원회 운영(규정)	3 (0.41%)	5 (0.68%)	24 (3.26%)	32 (4.34%)
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	0 (0.00%)	0 (0.00%)	163 (22.12%)	163 (22.12%)
이니셔티브 가입/MOU 체결	12 (1.63%)	2 (0.27%)	7 (0.95%)	21 (2.85%)

4) 유가증권 상장회사 ESG 위원회 현황, 경제개혁연대, 2022. 10

	안전 보고	안전 심의	안전 의결	안전 합계
투자(펀드,채권, 금융)	5 (0.68%)	2 (0.27%)	6 (0.81%)	13 (1.76%)
ESG 평가	35 (4.75%)	3 (0.41%)	3 (0.41%)	41 (5.56%)
현안 및 동향	189 (25.64%)	8 (1.09%)	28 (3.80%)	225 (30.53%)
소계	390 (52.92%)	31 (4.21%)	316 (42.88%)	737 (100.00%)

사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ESG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위해 급속으로 발전하였다기 보다는, 이들 회사의 지속가능성 수준이나 비재무적 리스크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지표화된 글로벌 이니셔티브 준칙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측면이 큰데, 실제 회사가 설치한 ESG 위원회의 면면을 봐도 해당 위원회의 전신이 '책임투자' 혹은 'CSR' 아니면 '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던 부서였기에, 이들 부서에 남아있는 업무 정체성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ESG 경영'과는 아직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표4. 주요 ESG 이니셔티브 준칙⁵⁾

이니셔티브	발표	지표	특징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기준 특정 주제 기준(경제/환경/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듈구조 ESG 분야 지표 구체화 및 보고 요구 사항 명확화
SASB Standards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개 산업군 총 77개 세분류 산업별 ESG 정보공개 지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별 중요성 지도를 통해, 해당 산업군의 중요 지표 제공 산업 내 다른 기업과의 비교 가능성 제고
TCFD Recommendations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구조, 경영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설정 4개 영역 11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지표 집중
WEF-IBC SCM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구조, 환경, 직원, 번영 등 4가지 핵심 축 핵심지표 21개, 확장지표 3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주요 ESG 정보 보고 기준 중 공통적이면서 중요한 지표 발체

5) 금융과 ESG의 공존: 지속가능한 금융회사의 경영전략,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1

또한 감사위원회에 의한 ESG 감독은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 등에서 다루지는 ESG 안건들이 최소한 준칙에서 요구하는 공시 수준과 회사가 속한 산업의 중대성 원칙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안건을 다룰 때 생성되는 공시정보들이 투자자의 재무적인 판단에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로 가공되는지 과정을 감독해야 합니다. 첨언하자면, 이는 이미 한국에서 기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위원회 역할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앞선 역할을 다 하게 되었을 때 전통적인 재무정보 공시와 지속가능성 공시가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회사의 ESG 경영 현황을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롯한 내부통제제도 개선과제

안 수 현 삼성KPMG ACI 자문위원·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상법 회사편에서는 내부통제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내부통제는 대체로 “회사의 자산 보호, 회계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조직운영의 효율성 증진, 경영 방침 및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회사의 모든 구성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통제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의미의 내부통제는 업무집행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할 의무는 이사회가 부담한다.¹⁾ 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는 이사회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담당은 대표이사과 집행조직이 하게 된다. 한편, 내부통제시스템의 바람직한 형태는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은 이사회와 경영판단에 맡겨진다.

반면, 상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²⁾에서는 내부통제의 개념이 이미 수용되어 있고, 특히 외부감사법에서는 상장법인 및 자산 1천억 이상의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회계정보의 검증방법 및 회계관리 임직원의 업무 분장 등이 담긴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구축하도록 하는 이른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동법 제8조). 즉 내부통제제도의 목적중의 하나인 회계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구축은 강제사항이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적 운영의 의의

외부감사법은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년도말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의 비상장법인에게 회계정보의 처리, 내부검증, 통제와 업무 분장에 관한 규정 및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도록 함으로서 회계정보는 이 제도에 의해서만 작성되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연 1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는 해당 회사 본점에 5년간 비치

1)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제6판, 박영사, 2022년, 429면

2)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이 대표적이다.



되며, 대표자는 직접 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이는 대표이사의 내부회계운영관리책임을 강화하여 회계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규제기관의 감리대상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포함되었으며,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감사하고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회사, 2020년부터는 5천억 이상 2조원 미만, 2022년에는 1천억 이상 5천억 미만 회사도 자체 분석한 내부회계관리결과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연 1회 실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평가는 설계의 적정성(규정과 조직)과 운영의 적정성을 모두 평가해야 하며, 유의한 미비점이 누락되지 않고 보고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 및 개선조치가 포함된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대표자의 평가보고서에 누락없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감사부서는 내부감사의 일환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또 정기적으로 운영평가를 제대로 하는지를 점검하고 외부감사인도 외부감사의 일환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준수 여부와 운영실태 보고내용을 검토/감사한다.

관련 규정 위반시 회사, 대표자, 감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감사의견을 받으면 거래소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고, 지정이후 다시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처럼 상장폐지 실질심사외에 내부통제미비에 대한 이사 감시의무 위반 등 소송위험도 없지 않은 점에서 경영진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검증이 되도록 회사 내부에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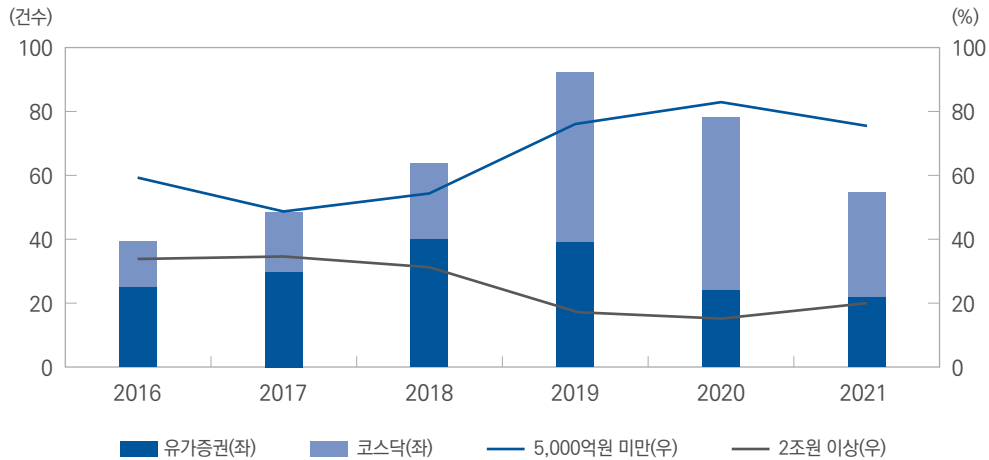
내부회계관리제도 최근 실태와 문제점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원이 2019-2020년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사례로 집계한 결과³⁾를 보면 위반사례가 총 97건으로(2019년 41건, 2020년 56건) 회사 58건, 대표자·감사 28건, 감사인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7개사(유가증권 1사, 코스닥 6사)를 제외한 대부분(51개사)이 비상장법인으로 관리인력이 부족하거나 법규 숙지가 미흡한 것이 의무위반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위반회사 58개사 중 19개사에 각 300~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대표자·감사의 경우에는 300~900만원, 그리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300만원~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한편, 지난 3년간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횡령·배임사건의 발생빈도를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가 의무화된 2019년을 기점으로 횡령·배임사건의 발생빈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2019년도 93건, 2020년 79건, 2021년에는 55건).

3)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2022. 9.27 보도자료

그림1. 연도별 횡령·배임사건 발생빈도⁴⁾



그럼에도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⁵⁾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으로 잘 통제된 환경이 구비되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이다.

그러한 우려는 또 다른 분석에서도 제기된다. 2021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은 모두 93개사로⁶⁾ 이중 80개사(86.02%)가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점이다.⁷⁾ 즉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과 회사 및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이 상당부분 불일치한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비적정 사유로 당기 감사 과정에서 재무제표수정(24.5%), 범위제한(23.3%), 자금통제 미비(15.7%), 회계인력 및 전문성 부족(15.1%),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9.4) 순으로 나타났다.⁸⁾

이는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평가와 감사(위원회)의 감독활동이 유효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하며, 경영진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조직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위원회)

4) 이성우, 최근 상장사 대규모 횡령사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22-03호, 자본시장연구원, 2022.1.18.~2.7. 6면.
 5) 대표적인 예로 2022년 1월 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직원이 1,88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음을 공시했는데, 최종 횡령규모는 2,215억원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오스템임플란트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동일한 담당자가 자금이체의 승인과 기록을 동시에 담당하였다. 개정 외부감사법의 시행으로 감사환경이 한층 강화되었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는 와중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부실이 드러났다.
 6) 유가증권시장 상장 11개사, 코스닥시장 64개사, 코넥스시장 18개사이다. 삼정KPMG, FY2021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검토 결과 및 시사점-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저널 21호, 2022. 5, 13면.
 7) 2021년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이 비적정인 93개사중 경영진 의견이 적정인 기업은 80개사, 감사(위원회) 의견이 적정인 기업도 80개사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위원회)평가보고서 자체를 미공시 또는 미제출한 상장법인이 2021년은 2개사, 2020년은 7개사로 외부감사법 제8조 위반이 될 수 있다.
 8) 삼정KPMG, 전계자료, 15면.



지원조직을 통한 실질적인 감독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는 개선사항을 시사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 억지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제도 정비 방향과 주요 내용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포함한 내부통제제도 관련한 법제 정비와 환경변화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①소규모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②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외부감사인 검토의무의 적용범위 대상도 축소하는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대신 ③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와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경영진의 내부회계 자율개선이 유도된다. ④한편,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2023년부터 시행된다.

현행 외부감사법에 의하면 자산 1천억 미만 상장회사도 2023년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대부분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시 편익에 비해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미만)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로 유지할 예정이다.⁹⁾ 이를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의원입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22. 4.18)이 2022년 12월 5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여 2023년부터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¹⁰⁾ 다만, 소규모 상장회사(자산 1천억 미만)의 경우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미국의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 완화¹¹⁾를 참고한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미국의 경우 바이오·기술성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상장회사들은 적절한 보완통제를 충실히 갖추고 실제 재무제표의 재작성빈도가 다른 상장기업 대비 유의적으로 낮은 등¹²⁾ 의무화 요건과 무관하게 회계정보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현재 자산 1천억 이상(직전 사업년도) 비상장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외부감사인 검토의무가 부과되나 비상장사는 자산총액으로만 적용대상이 결정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효과보다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외부감사인 검토의무의 적용범

9) 금융위원회, 회계신뢰는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추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방안, 2022. 10.6, 11면.

10)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11) 유동주식(public float) 시가총액 2억 5,000만달러 미만인 기업에 대해 감사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1억달러 미만일 경우 유동주식 시가총액 7억달러까지도 감사의무가 면제된다.

12) Lewis, C., White, J. T., Science or Compliance: Will Section 404(b) Compliance Impede Innovation by Emerging Growth Companies in the Biotech Industry?, 2019 (이상우, 전개자료, 8면 재인용)

위 대상을 축소할 계획이다.¹³⁾ 즉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는 현행기준과 동일하게 자산 1천억원 미만만 면제하고 기타 비상장회사는 면제기준을 자산 5천억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그 외 특수목적회사(SPC)는 자산규모 및 법상 근거 여부를 불문하고 면제된다.

이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①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강화와 ②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경영진의 내부회계 자율개선이 유도될 예정이다. 공시강화 방안으로 현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고서상의 공시내용이 형식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내부회계준거기준(평가·보고기준)과 상세한 공시서식(운영실태와 평가보고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한 감독활동과 관련한 공시서식도 개발·적용될 예정이다.¹⁴⁾

그 외에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현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감사의견을 받으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고, 지정이후 다시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취약점 시정이 어려워짐을 고려하여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제외하고 회계부정에 따른 감리 제재시 경영진·내부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충실성에 따라 제재조치를 가중·감경할 예정이다.¹⁵⁾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제도 강화차원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책무영역을 사전에 확정해서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아울러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관리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임원을 제재하며 1차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

13) 금융위원회, 회계신뢰는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추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방안, 2022. 10.6, 13면.

14) 예컨대 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협의 및 자금부정 위험 관련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개선(안)> (경영진·외부감사인과의 소통 관련 공시서식 예시)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논의내용
경영진과의 합의				
1	'22.2.17.	감사위원회: 위원 3명 회사: 재무팀장	대면 회의	• 직전연도 운영실태보고서 시정계획 이행결과 검토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 운영 개선방안
2	'22.4.8.	감사위원회: 위원 3명 회사: 재무팀장, 감사팀장	영상 회의	• 자금부정 통제를 위한 추가 테스트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영진의 준비사항 확인 (통제활동 설계 등)
외부감사인과의 합의				
3	'22.2.24.	감사위원회: 위원 3명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외 1명	대면 회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상황 • 외부감사인 보고내용과 경영진 운영실태 보고내역 비교

*출처: 금융위원회, 회계신뢰는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추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방안, 2022. 10.6, 18면.

15) 감리결과 제재사유에 해당함에도 경영진이 내부회계에 중요한 취약점이 없다고 보고한 경우 조치 1단계 가중하고, 회사가 내부회계 취약점을 스스로 공시하고 개선한 경우 조치 1단계를 감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3년 2분기까지 코스닥 상장규정과 외감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는지 회사가 소명하게 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감한 면책을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감시의무 명확화를 위해 감독책임이 이사회에 있음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도입하며, 관련제도로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책임지도제도(map of responsibility)도 시행할 계획이다.¹⁶⁾ 이는 비록 회계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사회 감독책임을 명문화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면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와 제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2003년 외부감사법에 의해 영구 법제화된 이후 약 20년이 경과하였다. 그러나 최근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를 기화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인지에 관해 의구심이 없지 않다. 한편으로 내부통제제도 전반의 실효성 제고방안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¹⁷⁾

한편에서는 소규모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담비용을 줄이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상장기업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자회사 수가 많은 경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부담과 책임이 가법지 않다.

그러나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태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개별회사에 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축과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영진의 법규 위반은 물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감독책임 소홀이 적지 않아 우려가 된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의 경우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것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불성실하게 운영하거나 간과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관리와 운영에 최고경영자와 이사회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¹⁸⁾

다만, 경영진과 이사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충실한 설계와 운영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인적·금전적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구축과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16) 변재호,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자본시장연구원, 2022.12.20.

17) 최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세한 것은 이효섭·이석훈·안수현,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연구보고서 22-01, 자본시장연구원, 2022.1. 참고.

18)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담당 임직원과 감사(위원)에게 중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이상우, 전자자료, 7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 2. 가. 2) 참조

국내 상장법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상 주요 애로사항 분석 및 기업과 감사인을 위한 제언

삼성 KPMG ACI

- 국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상 주요 애로사항을 설문한 결과, '종속기업의 인적자원·인프라 환경 문제', '내부회계 전문 인력의 부족', '경영진 인식 부족'으로 조사됨
- 경영진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하여, 그룹차원의 통제와 연결 결산 관련 통제를 수립해야 하며, 인력 및 인프라 확보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견·중소 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조직을 구성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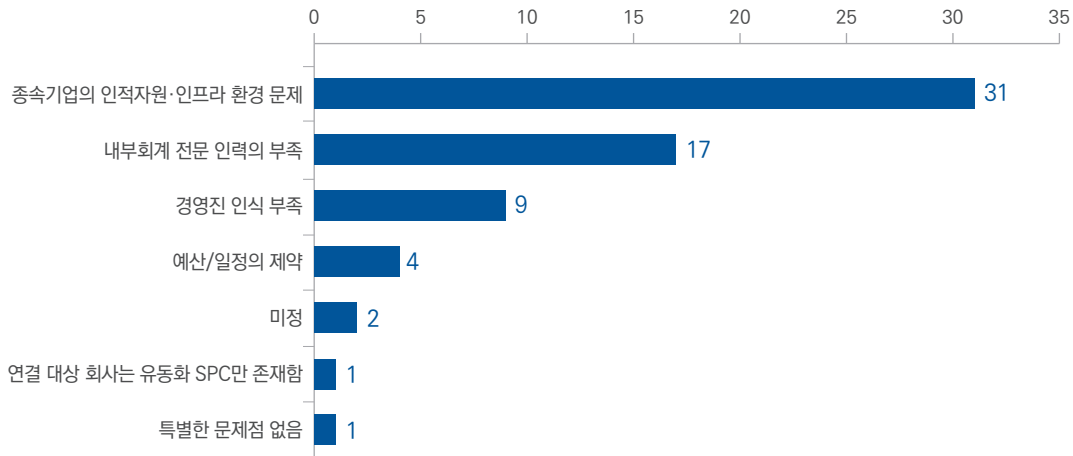
개요

- 2023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관련 준비 현황을 파악하고자 삼성KPMG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함
- 본고에서는 국내 상장법인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시 겪는 주요 애로사항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과 감사인의 주요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국내 상장법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상 애로사항

- 조사대상은 총 65개사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30개사,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15개사, 자산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20개사로 구성됨

그림1. (전체 응답)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상 애로사항



■ 서베이 결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시 겪는 애로사항 상위 3가지는 ‘종속기업의 인적자원·인프라 환경 문제’, ‘내부회계 전문 인력의 부족’, ‘경영진 인식 부족’으로 조사됨

- ‘종속기업의 인적자원·인프라 환경 문제’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은 기업은 65개사 중 31개사(48%)임
- ‘내부회계 전문 인력의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은 기업은 65개사 중 17개사(26%)임
- ‘경영진 인식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은 기업은 65개사 중 9개사(14%)임

표1. (자산규모별 응답)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상 애로사항

구분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자산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종속기업의 인적자원·인프라 환경 문제	16	53%	8	53%	7	35%
내부회계 전문 인력의 부족	6	20%	5	33%	6	30%
경영진 인식 부족	3	10%	1	7%	5	25%
예산/일정의 제약	1	3%	1	7%	2	10%
미정	2	7%	0	0%	0	0%
연결 대상 회사는 유동화 SPC만 존재함	1	3%	0	0%	0	0%
특별한 문제점 없음	1	3%	0	0%	0	0%
합계	30	100%	15	100%	20	100%

- 조사대상 기업을 자산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군의 경우 ‘내부회계 전문 인력의 부족’, ‘예산/일정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안정적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기업과 감사인의 주요 대응 과제¹⁾

-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 복잡도가 증가하고 평가 대상 통제의 범위 또한 확대되므로, 기업과 감사인은 다음의 주요 대응 과제를 확인하여 충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표2. 기업과 감사인의 주요 대응 과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²⁾ 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와 원칙의 재정립 ● 연결재무제표 수준의 지배기업/종속기업 간의 관리 체계 현황 및 재무성과 보고체계 점검, 실행 목표 재정립 ● 연결재무제표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유지를 위한 제반 정책과 절차의 수립·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절차에 대한 고려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역할과 책임(Roles and Responsibility) 정립 ● 지배기업 주도의 표준화되고 일원화된 통제체계 vs. 개별 기업의 복잡성·다양성을 반영한 통제체계에 대한 고려 ● 국내외 종속기업/부문³⁾의 경영관리를 위한 인프라 및 시스템의 구성·활용 정도 점검 및 향후 개선안 수립 ● 그룹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 부문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범위 선정 ● 그룹 차원의 통제 및 연결결산 관련 통제의 식별 및 테스트 ● 부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한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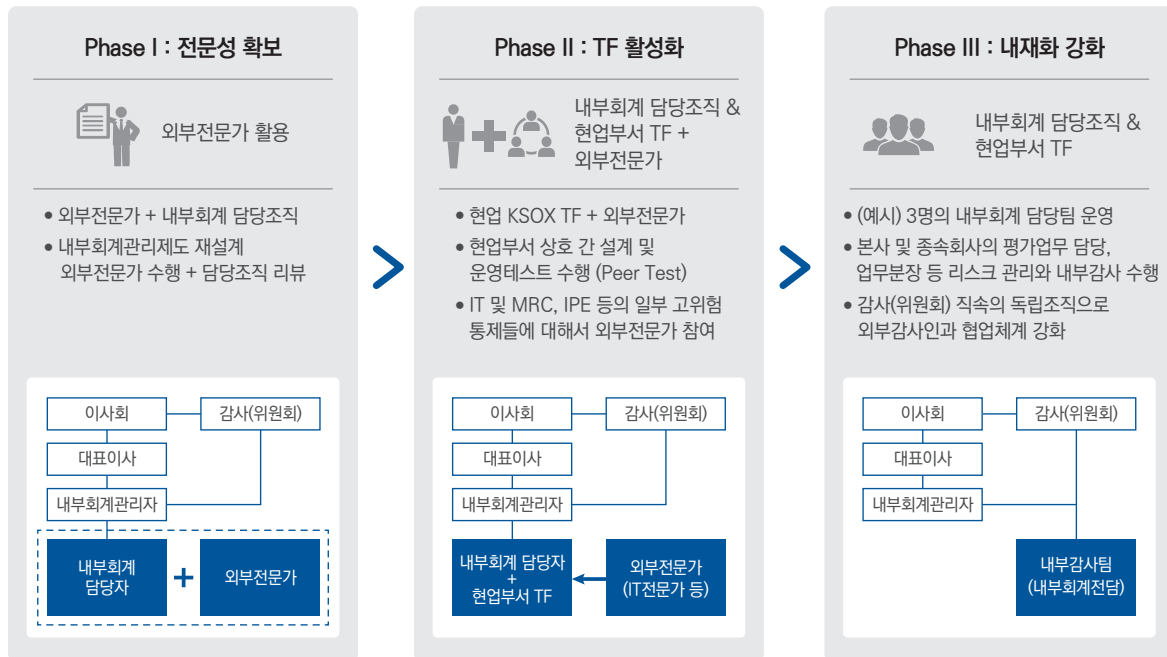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2021.4
 2) 감사기준서에 사용되는 용어이며, 그룹재무제표(2개 이상 부문의 재무정보를 포함하는 재무제표)에 재무정보가 포함되는 모든 부문을 의미함
 3) 감사기준서에 사용되는 용어이며, 그룹경영진 또는 부문경영진이 그룹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무정보를 작성하는 대상인 실체 또는 사업활동을 의미함

[참고] 중견·중소 상장법인 평가조직 편제 로드맵

■ 중견·중소 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 예산 및 인력 제약으로 인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전문성 내재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단계적 조직 구성을 위한 상세방안은 [그림2]에 기재함

- (Phase I) 외부전문가의 주도하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기업의 내부회계 담당조직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확보
- (Phase II) 기업에서 현업 KSOX TF 조직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설계 및 운영테스트를 직접 수행하고, 일부 고위험 통제들에 대해서만 외부전문가를 활용
- (Phase III) 기업의 내부회계 담당조직과 현업부서 TF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전담하며 내재화를 강화

■ 그림2. 중견·중소 상장사 평가조직 편제 로드맵



소규모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

삼정 KPMG ACI

- 2023년 1월 17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
- 개정된 법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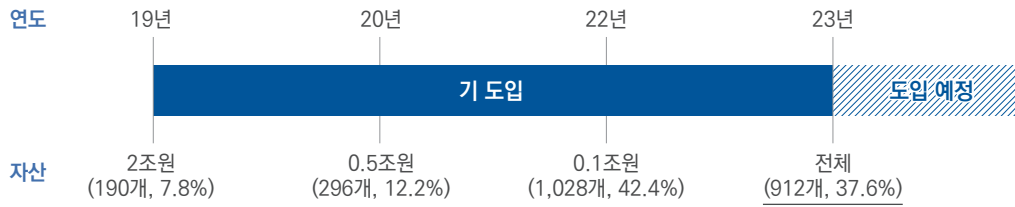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

- 2023년부터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에게도 적용 예정이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되어, 인증수준은 현행과 같이 '검토'로 유지함²⁾
 - (개정 전) 개정 전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도 2023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가 적용됨
 - 소규모 상장법인 대부분은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규모가 크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 편익에 비해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됨

1) 금융위원회,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됩니다", 2022.12.5.

2) 미국에서도 시가총액 7,500만 달러 미만 기업 및 시가총액이 7,500만 달러 이상 7억 달러 미만인면서 매출액이 1억 달러 미만인 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중

그림1. 개정 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 시기



- (개정 후) 2023년부터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면제됨
 - 다만,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함³⁾

기대효과

■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부회계 고도화비용과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 절감이 예상됨. 신·구조문대비표는 아래와 같음

표1. 외부감사법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p>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 ⑤ (생략)</p> <p>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p> <p>⑦·⑧ (생략)</p>	<p>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 ----- -----</p> <p>⑦·⑧ (현행과 같음)</p>

3) '검토'와 '감사'의 차이 :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경영진 작성)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검토'와 달리, '감사'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통제재수행, 문서검사 등)

삼성KPMG ACI 카카오톡 채널 OPEN

ACI 카카오톡 채널은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유용한 콘텐츠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하여 다양한 소식을 받아 보세요.



친구 추가 후 구독하시면
선착순 **300** 분께 선물을 드려요!



삼성KPMG ACI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방법



QR코드 스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카카오톡에서 바로 **삼성KPMG ACI** 채널에
친구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TALK

삼성KPMG ACI

카카오톡 친구검색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삼성KPMG ACI 를 검색하시면
채널에 친구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ACI 카카오톡 채널 주요 기능



이슈 리포트

적시성 있는 이슈를 담은
동영상 리포트 제공



월간 뉴스레터

최신 감사위원회
뉴스 큐레이션 제공



행사안내

ACI 연간 행사 및 교육일정
안내 및 세미나 신청



발간물 신청

ACI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발간물 신청



문의하기

건의 및 문의하기를 통한
개별 문의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Audit Committee Institute

ACI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E. eunsupphan@kr.kpmg.com

김유경 ACI Leader, 전무이사

E. youkyoungkim@kr.kpmg.com

심정훈 상무이사

E. jshim@kr.kpmg.com

이민형 이사

E. minhyunglee@kr.kpmg.com

엄수진 수석연구원

E. sujineom@kr.kpmg.com

오은진 선임연구원

E. eunjino@kr.kpmg.com

남연지 연구원

E. yeonjinam@kr.kpmg.com

박수진 연구원

E. spark153@kr.kpmg.com

ACI 자문교수단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정도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ACI Committee

신경철 부대표

Business Development & Markets 본부 / 경제연구원

E. kshin@kr.kpmg.com

신장훈 부대표

IA / Consumer Markets I 본부

E. jshin@kr.kpmg.com

변영훈 부대표

Industrial Markets I 본부

E. ybyun@kr.kpmg.com

허세봉 부대표

Head of DPP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E. sebonghur@kr.kpmg.com

박성배 부대표

Information, Communication & Entertainment I 본부

E. sungbaepark@kr.kpmg.com

오현창 전무이사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E. heonchangoh@kr.kpmg.com

신재준 전무이사

Banking & Finance I 본부

E. jaejunshin@kr.kpmg.com



Audit Committee Institute

삼정KPMG ACI는 재무보고 감독, 감사품질 확보, 리스크 관리, 국내외 규제 준수 등 감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감사위원회 및 감사에게 제공하고, 감사위원·감사·사외이사·기타 이사회 멤버 간 지식 교류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위상 제고와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활동 및 간행물 발행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저널 Audit Committee Journal

Vol. 22 | January 2023 (통권 제22호)

발행인 삼정KPMG | 지은이 삼정KPMG ACI | 제작·인쇄 서광기획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737)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06236)

전화 (02) 2112-3305 | 팩스 (02) 2112-3680 | 이메일 kr-fmsamjongkpmgaci@kr.kpmg.com

삼정KPMG ACI 홈페이지 <https://home.kpmg.com/kr/ko/home/services/aci.htm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본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